



신희종의 항일운동 행적규명과 명예회복 사건

【결정사안】

신희종(愼熙宗, 1900.5.5~1932.4.13)이 신도출·주남고 등의 독립운동활동에 연락총책을 맡아 신한별보 수천 부를 등사하여 함양의 이갑수·안덕보·유진성 등에게 전달하고 김천·합천 등지로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던 중 1932. 4. 10. 거창경찰서 순사에게 잡혀간 4일 후 야산에서 손이 뒤로 묶인 채 나무에 목이 매여 숨져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항일운동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진실규명을 요청한 사건으로 신청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희종의 활동과 항일운동과의 객관적 연관성을 규명할 수 없어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주남고·신도출 등이 1919년 8월 거창면에서 군자금과 의용병 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신희종이 그 항일운동에 연락총책으로 활동한 사실은 찾을 수 없었다.
2. 1922년 7월 13일 신희종이 거창기독교청년회 주최로 열린 임시강연회에서 ‘인생의 급선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한 동아일보 기사는 있지만 그것이 항일운동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3. 신희종이 거창농민동맹을 조직하려고 활동하다가 1931년 11월 3일 거창경찰서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같은 달 6일 석방된 사실은 있지만 그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었다.
4. 신희종의 사인과 관련하여서는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 외에는 아무런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규명이 불가능하였다.

【전 문】

【사 건】 가-4365 신희종의 항일운동 행적규명과 명예회복 사건

【신청인】 신중신

【결정일】 2007. 6. 26.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규명 불능 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신청인은 신희종(愼熙宗, 1900.5.5~1932.4.13)이 신도출·주남고·임유동·박달준 등의 독립운동에 연락총책을 맡아 신한별보 수천 부를 등사하여 함양의 이갑수·안덕보·유진성 등에게 전달하고 김천·합천 등지로도 배포하는 항일운동을 했으며, 1930년(30세) 전후부터는 신도출의 지시를 받고 농민단체를 결성하여 일제가 조선인들에게 물린 가혹한 물세·토지세 등에 반대하여 일제경찰에 맞서 싸우다가 수차례 거창경찰서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32년 4월 10일 거창경찰서 순사 강주열 등 3명에게 잡혀갔고, 그로부터 4일 뒤인 4월 13일 거창읍 동동(현 대동리) 화장장 뒷산(盍山)에서 손이 뒤로 묶인 채 나무에 목이 매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신희종이 항일운동과 관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II. 진실규명 과제

첫째, 신희종이 신도출·주남고·임유동·박달준 등의 독립운동에 연락총책으로 신한별보 수천 부를 등사하여 이갑수·안덕보·유진성 등에게 전달하는 등의 항일운동을 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희종이 이 항일운동의 연락총책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면 항일행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희종이 농민단체를 결성하여 일제의 식민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다가 일제 거창경찰서 순사에게 끌려간 뒤 살해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것이다.

이는 식민지시기 조선 노동자·농민운동은 자기 계급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경제투쟁을 민족해방 혹은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과 결합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가진다.¹⁾ 그리고 1930년대 조선 농민들은 농민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요시찰·요주의 인물’들은 총독부 고관들이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범죄예방 명목으로 경찰서에 구금되었다.²⁾ 때문에 신희종이 1930년대 전반기 농민단체를 조직하여 일제의 식민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다가 일제에 의해 살해되었

1) 강만길, 『한국민족해방투쟁사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근현대연구입문』, 역사비평사, 1988, 74쪽.

2) 지수걸,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3, 3쪽.



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Ⅲ. 진실규명의 목적과 근거

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진실규명의 범위 중 하나로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범위에 해당되므로 조사개시하였다.

Ⅳ. 조사 방법과 경과

1. 조사 방법

신희종 사건의 조사는 민족독립조사국 조사6팀 담당조사관의 책임하에 문헌자료조사, 전문가 자문 및 신청인·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사를 병행하였다.

가. 문헌자료 조사

신희종 사건과 관련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사논저목록,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각 대학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검색하였다.

나. 전문가 자문

거창대성환경정보고등학교 사회담당교사이자 거창지역 향토사학자 조익현³⁾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다. 진술 청취

신청인 신중신⁴⁾, 참고인 구분용⁵⁾·신용균⁶⁾ 등을 만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2. 조사 경과

2006년 7월 19일 접수된 신희종사건은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문헌자료 검색, 전문가 자문,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 조사 진행과정을 시간과 일정순서에 따라

3) 거창지역 향토사학자 조익현 자문 내용.

4) 신청인 신중신 진술서.

5) 참고인 구분용 진술서.

6) 참고인 신용균 진술서.

조사일지⁷⁾를 작성하였다.

V. 조사결과

첫째, 신희종이 신도출·주남고·임유동·박달준 등의 독립운동에 연락총책으로 신한별보 수천 부를 등사하여 이갑수·안덕보·유진성 등에게 전달하는 등의 항일운동을 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주남고 등의 독립운동 행적 가운데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남고(朱南皐, 1888.9.14.~1951.3.23.)는 이덕생(李德生) 등과 1919년 8월 거창면에서 국권회복운동을 위한 군자금과 의용병을 모집하여 만주 군정서에 파견하기로 결의하고 신도출에게 군자금을 요청하여 850원(円)을 받았고, 주남수(朱南守) 등 4명을 의용군으로 만주 군정서로 파견하였다. 주남수는 1920년 3월말 만주군정서로부터 국내로 파견되어 오형선(吳亨善) 등과 신한별보(新韓別報)라는 제목의 문서를 수십 부 등사하여 정장현·이갑수 외 2명에게 배부하여 선전하게 했고, 이갑수는 배부 받은 문서를 함양군 읍내 등에 배포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주남고는 신도출 등과 함께 1920년 4월 27일 거창경찰서에 체포되었다.⁸⁾

신도출(愼道出, 1898.2.7.~1959.5.13.)은 위 군자금 제공과 신한별보를 배부하는 등의 항일운동을 하다 1921년 1월 8일 거창경찰서에서 제령 제7호·출판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고 검사국으로 송국되어 1년 5월여에 걸쳐 유치된 뒤 석방되었다.⁹⁾

해인사 승려인 박달준(朴達俊, 1894.1.10.~1965.3.25.)은 경남 합천에서 만세운동(1919.3.31.~4.16.)에 참가한 뒤 서간도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1919.11.~1920.8.)를 수료하고 제1군정서지구 경비대에서 편입되었고, 1920년 9월 해인사에서 독립운동 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가 1921년 3월 4일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1921년 5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았다.¹⁰⁾

임유동(林有棟, 1900.11.18~1950.12.24)은 1924년 북경 국립사범대학 재학 중 하기방학 때 서울에서 조선학생총연합회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1926년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1927년 6월 중순경 귀국하였는데, 조선학생총연합회 관련 사실 때문에 일제경찰에 체포되었다가 1927년

7) 사건 조사일지.

8) 『獨立義勇兵及軍資金募集員ノ檢擧』(1921.1.29.)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kh2.koreanhistory.or.kr/>).

9)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10, 1993, 189쪽.

10)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9, 1991, 163쪽. ; 『大正十刑公第二二九・三四〇號 判決』(1921.5.25)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kh2.koreanhistory.or.kr/>)



7월 25일 석방되었다.¹¹⁾

이갑수(李甲銖, 1921년 당시 38세)는 신한별보를 배포하다가 거창경찰서에 체포되었다.¹²⁾ 유진성(俞鎭成, 1879.1.27~1949.4.18)은 1942년 4월 2일 성주읍 장날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고, 독립신문을 비밀리에 등사하여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는데 1920년 8월 의성군 김충한 목사에게 독립신문을 전달하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출판법·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진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¹³⁾

안덕보(安德保)는 1920년 3월말경 일시 귀향한 김남수 등이 제작한 신한별보라는 등사물 5~15부를 받아 배포하였다.¹⁴⁾

그러나 신희종이 위 의용군과 군자금 모집 등의 항일운동 활동에 있어 연락총책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신희종은 1922년 7월 13일 기독교청년회¹⁵⁾ 주최로 열린 임시강연회에서 '인생의 급선무'란 제목으로 강연을 했는데,¹⁶⁾ 신희종이 강연한 내용이 항일운동과 관련이 있는지 신도출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신희종이 농민단체를 결성하여 일제의 식민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다가 일제 거창경찰서 순사에게 끌려간 뒤 살해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것이다.

거창지역 농민단체는 소작상조회(1923.11.15), 거창군노동회(1924.9.24), 거창노동조합(1927.4.4), 낙동강농조 거창지부(1930.1), 소작인조합(1931.4), 거창농민동맹 창립 기도(1931.11) 등이 있었다.¹⁷⁾ 이 농민단체 가운데 신희종은 거창농민동맹을 조직하려고 활동하다가 1931년 11월 3일 거창경찰서에 체포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같은 달 6일 석방된 것이 아래 기사로 확인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거창사회단체 중의 하나인 가하단(團)을 해소한 후 즉석에서 거창농민동맹을 조직키로 하고 준비위원을 선거하여 맹원모집에 활동하여 오던 신희종(愼熙宗) 외 7명이 돌연히 거창경찰서원의 손에 피검되어 취조를 받던 중 3일이 지낸 지난 6일 오후 10시에 무사히 석방되

11)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9, 1991, 388~389쪽.

12) 「獨立義勇兵及軍資金募集員ノ檢舉」(1921.1.29).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kh2.koreanhistory.or.kr/>)

13)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3, 1987, 498~499쪽; 「大正九刑第二一四・二三三・二一七號 判決」(1920.11.29).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kh2.koreanhistory.or.kr/>).

14) 慶北警察局, 『高等警察要史』, 연도미상, 206~207쪽.

15) 거창기독교청년회는 2년동안 활동을 정지했다가 1922년 6월 26일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개설했는데 신도출은 실업부장에 선임되었다. 「居昌基督青年總會」 『동아일보』, 1922.7.1.)

16) 「居昌基督青年講演」 『동아일보』, 1922.7.22.;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신희종의 할아버지가 술도기(양조장)를 경영했고 신희종은 서당 교육만 받았다고 한다. 「신청인(신증신)진술조서」, 2007.4.4.)

17) 당시 노동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단체도 농민이 중심이었다. (거창군사편찬위원회, 『거창군사』, 거창군, 1997, 685~687쪽)

었다 한다.¹⁸⁾

거창 가하단은 1928년 4월 5일 거창기독교청년회관내에서 제1회 월례회를 개최하여 임시 집행위원부를 구성하였는데,¹⁹⁾ 가하단이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를 규명할 수는 없었다.

신도출은 1935년 2월 10일에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금고 8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으나²⁰⁾ 신도출이 신희종에게 1930년대 거창 농민단체를 지시했는지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찾지 못하였다.

셋째, 신희종의 사망 원인을 찾는 것이다.

거창경찰서에 강주열이 순사로 재직했는지도 확인결과 알 수 없었고,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현재로서는 어떠한 증거자료도 발견 할 수 없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VI. 결론

주남고·신도출 등이 1919년 8월 거창면에서 군자금과 의용병 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신희종이 그 항일운동에 연락총책으로 활동한 사실은 찾을 수 없었다.

1922년 7월 13일 신희종이 기독교청년회 주최로 열린 임시강연회에서 ‘인생의 급선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한 동아일보 기사는 확인했지만 그것이 항일운동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 할 수 없었다.

신희종이 거창농민동맹을 조직하려고 활동하다가 1931년 11월 3일 거창경찰서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같은 달 6일 석방된 것이 확인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신희종의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 외에는 아무런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어 규명이 불가능하였다.

18) 「農盟員七人 六日に 釋放」 『동아일보』, 1931.11.11.

19) 「가하團月例會」 『중외일보』, 1928.4.11.

20)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10, 1993, 189쪽.